

신규 용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

(제4조제1항 관련)

1. 신규 용자의 제한율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1년차	2년차	3년차 이후
신규 용자의 제한율	20%	30%	50%
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	20%	30%	50%

비고: 어선·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, 1년차의 다음 해 및 그 다음 해를 각각 2년차 및 3년차라 하며, 3년차까지 제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·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에 대해서는 3년차가 끝나는 해의 다음 해부터는 3년차에 해당하는 제한율과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.

2. 신규 용자액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다음 계산식에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가. 신규 용자액

1) 용자 대상자별로 용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: 해당 연도 용자 가능액 $\times$ (100% - 제한율)

2) 용자 대상자별로 용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: 동일 또는 유사 조건(업종·톤급 등) 어선·어구소유자의 해당 연도 용자 가능액 $\times$ (100% - 제한율)

나.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: 전년도 공급량 $\times$ (100% - 조정률)

3.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·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어선·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